

#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369
----------	------

2020년 4월 23일  
환경수자원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0년 3월 11일, 김종무, 송명화의원(찬성자 18명)
- 나. 회부일자 : 2020년 3월 1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9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 
(2020년 4월 23일 상정, 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 설명자: 김종무 의원]

### 가. 제안이유

- 자연환경 보전대책 수립 시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, 시민,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하천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 과정에 시민의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골자

- 1) 시장은 자연환경 보전에 시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4조)
- 2) 하천 관리기관은 하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과정에 시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2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자연환경보전법」 및 시행령, 「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」 등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 : 해당없음

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[수석전문위원 : 이 재 호]

#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환경 보전대책 수립 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,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과정에서 시민·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의 근거를 만들도록 한 것임.

#### 나. 검토의견

##### 1) 법령의 근거

- 「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」는 서울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「자연환경보전법」 및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위임된 사항을 서울시 조례로 정하여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·관리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,
- 동 조례에는 서울시 생태·경관 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, 야생생물의 보호, 자연환경정보의 관리 및 활용, 자연자산의 관리, 시민참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.

- 하천 관련된 법령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관할하는 「하천법」이 있으며, 이에 포함되지 않는 하천은 「소하천정비법」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.
- 하천정비에 관한 내용 중 「하천법」 제43조에는 자연친화적 공법으로 하천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으며, 서울시에는 「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」 제32조에 이수와 치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자연형 하천정비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등 친환경적 하천정비 관련 사항을 동 조례에서 다루고 있음(자료 1).

## 2)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

### 가)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의견 (안 제4조 관련)

- 동 조례 제4조에 시장은 자연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고, 생태적 건전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정보, 기술 교류에 앞장서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에 관해 명시하고 있음.  
(자료 2 참고)
- 동 조례 제4조제1항에 시장은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나, 금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‘시장은 시민이 자연환경 보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’ 자연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것임.
- 시장이 자연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시민의 참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시민 참여만 한정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조치임.
- 그러나 시민참여를 독려할 경우 자연환경 보전에 보다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, 기존 시장의 책무와 구청장의 책무는 유지하되 시장은 시민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.

## 나) 하천정비 협의체 구성에 관한 의견 (안 제32조 관련)

- 국가하천의 경우 여러 자치단체를 관통하는 광역의 권역을 가지고 있어 각 자치단체의 의견을 종합한 통합 관리가 필요하나,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소규모 권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생활권을 같이하는 시민과 전문가의 역할이 보다 필요함.
- 최근 강동구에서는 「서울특별시 강동구 하천관리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여 지역 자연형하천(고덕천)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,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한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음.
- 자연형하천정비 계획 수립과 정비과정에 시민참여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하는 것은 시민참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.
- 그러나 ‘하천 기본계획 및 하천 정비계획’에 관한 사항은 「하천법」에 근거한 이수와 치수를 담당하는 통합적 계획으로 물순환안전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, 본 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은 푸른도시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‘자연형 하천정비’에 한정된 것으로 그 내용에 따라 담당 부서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.
- 따라서 시민 등 전문가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‘하천 정비계획’ 업무가 아닌 ‘자연형 하천정비 계획’에 관한 업무로 범위를 한정하여 명시하여야 할 것임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수정안 요지

- 시장의 책무는 유지하되, “시민이 자연환경 보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”는 내용을 별도로 추가하며,
- 안 제32조 관련 “정비계획 수립” 내용을 “자연형 하천정비계획 수립”으로 한정하여 명시하도록 함.

8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369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4월 23일  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시장의 책무는 유지하되, “시민이 자연환경 보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”는 내용을 별도로 추가하며,
- 안 제32조 관련 “정비계획 수립” 내용을 “자연형 하천정비계획 수립”으로 한정하여 명시하도록 함.

## 2. 주요 골자

- 안 제4조제1항은 현행과 같이 하고, 안 제4조제4항을 제5항으로, 같은 조에 제4항에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다.
- 안 제32조제3항 중 “정비계획 수립”을 “자연형 하천정비계획 수립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정비”를 “자연형 하천정비”로 한다.

## 3. 참고사항 : 생략

##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1항은 현행과 같이 한다.

안 제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시장은 시민(법인·단체 및 그 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안 제32조제3항 중 “정비계획 수립”을 “자연형 하천정비계획 수립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정비”를 “자연형 하천정비”로 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4조(시장 등의 책무) ① <u>시장은 지역적 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시장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을 위한 계획 등을 수립·시행하는 때에는 자연환경의 생태적 건전성을 고려하여 그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시장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국내외의 도시 및 국제단체 등과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정보·기술 등을 교류·협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자치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, 관할구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(시장 등의 책무) ① <u>시장은 시민(법인·단체 및 그 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</u> ----- -----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	<p>제4조(시장 등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④ <u>시장은 시민(법인·단체 및 그 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5조(시민의 책무) ① <u>시민</u> (법인·단체 및 그 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은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.	제5조(시민의 책무) ① <u>시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	제5조(시민의 책무) ① (개정 안과 같음)
제32조(자연형 하천정비) ① ~ ② (생략)	제32조(자연형 하천정비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	제32조(자연형 하천정비) ① ~ ② (개정안과 같음)
<u>&lt;신설&gt;</u>	③ 하천의 관리기관은 제1 항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 과정에 시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하여 시민,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 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	③ ----- ----- <u>자연형 하천정비</u> <u>계획 수립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<u>&lt;신설&gt;</u>	④ 하천의 관리기관은 정비 및 유지관리에 시민의 자 발적인 활동이 지속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④ ----- <u>자연형 하천</u> <u>정비</u> ----- ----- -----.

##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시장은 시민(법인·단체 및 그 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 자연환경 보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시민(법인·단체 및 그 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을 “시민”으로 한다.

제32조에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하천의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연형 하천정비계획 수립과 정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하여 시민,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④ 하천의 관리기관은 자연형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시민의 자발적인 활동이 지속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시장 등의 책무) ① ~ ③ (생략)</p> <p>〈신설〉</p> <p>④ 자치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, 관할구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(시장 등의 책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시장은 시민(법인·단체 및 그 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</p>
<p>제5조(시민의 책무) ① <u>시민(법인·단체 및 그 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은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5조(시민의 책무) ① <u>시민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32조(자연형 하천정비) ① ~ ② (생략)</p> <p>〈신설〉</p>	<p>제32조(자연형 하천정비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하천의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연형 하천정비계획 수립과 정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하여 시민,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</u></p>
<p>〈신설〉</p>	<p>④ <u>하천의 관리기관은 자연형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시민의 자발적인 활동이 지속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